





COVID-19 일반 체크리스트 생명과학 분야 고용주 대상

2020년 7월 2일

이 체크리스트는 생명과학 분야 고용주가 직장 내 COVID-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마련된 것이며 생명과학 분야 고용주 지침을 보완하는 자료입니다. 본 체크리스트는 요약이며, 지침의 일부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본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기 전에 지침을 숙지하십시오.

감염성 병원체를 취급하는 작업장

병원체가 함유되어 있고 공중에서 병원체가 분산될 수 있는 연구 시설, 실험실 및 기타 장소는 시설의 생물학적 안전 담당자가 관리하는 효과적인 서면 생물안전 계획(Biosafety Plan)을 수립, 구현 및 유지해야 합니다. 생물안전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	감염성 병원제에 노출되는 식무 분류 목독.
	실험실 물질에 존재할 것으로 알려졌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감염성 병원체 목록 및 해당 생물안전 조치.
	병원체가 함유된 모든 유입 물질이 비활성화되거나 약독화된 것으로 검증될 때까지 독성물질로 취급되도록 하는 절차.
	생물학적 안전 책임자가 <u>미생물학 및 바이오의학 실험실에 대한 CDC 생물안전 지침</u> 에 따라 수행하는 위험 평가.
	격리 장비 및 절차를 포함한 실행 가능한 엔지니어링 제어.
	위험 평가 및 CDC 지침에 따라 안전한 작업 관행 통제가 요구되며 안전하지 않은 작업 관행이 금지됨.
	호흡기 보호 장비를 포함한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(PPE).
	실험실 표면, 장비 및 도구에 대한 효과적인 오염 제거 및 소독 절차.
	근로자에게 위험을 전달하는 절차 및 필수 근로자에게 교육 제공.
	시설 내 통제되지 않은 출하 및 시설 외부의 미처리 출하를 위한 비상 절차.
	근로자에게 해당 백신 제공.
	실험실 병원체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의학적 추적관찰을 조사하고 제공하는 절차.
	매년 시설을 검사하고 시설의 생물안전 절차를 점검하는 절차.
П	건사 및 간사 중에 박겨되 결하은 기록하고 수전하는 전차



서면 직장별 계획의 내용

병원체를 취급하든 아니든 모든 시설은 COVID-19 전파를 줄이기 위한 서면 작업장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.

- □ 계획 실시를 책임지는 사람.
- □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할 위험 평가 및 조치.
- □ CDPH 지침에 따른 얼굴 가리개의 사용.
- □ 직원 및 직원 대표를 대상으로 한 계획에 대한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.
- □ 규정 준수를 확인하고 결함을 문서화하고 수정하는 절차.
- □ 코로나 발병 사례를 조사하고, 현지 보건 부서에 알리며, 근무 중인 밀접 직장 접촉자 및 감염된 직원을 식별하고 격리하는 절차.
- □ CDPH 지침에 따른 작업장에서 발생 시를 위한 프로토콜.
- □ 추가 발병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획 업데이트.



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

- □ 해당되는 경우, 병원체로 작업하는 동안, 공장의 생물안전 계획 및 에어로졸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통제에 대한 교육.
- □ COVID-19에 대한 정보, 확산 방지 및 특히 취약한 사람.
- □ CDC 지침을 적용하여 체온 및/또는 증상을 확인하는 등 가정에서 자가 선별 검사 실시.
- □ 직원이 기침, 발열, 호흡 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최근의 미각 또는 후각 상실, 코막힘 또는 콧물, 구역질 또는 구토나 설사가 있거나 COVID-19 진단을 받았거나 접촉한 사람이 진단을 받은 경우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.
- □ COVID-19 진단 후에는 증상 발현 10일 후 및 발열이 멈춘 지 72시간 후에만 복귀.
- □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.
- □ 손 씻기의 중요성.
- □ 근무 시간 및 퇴근 후 시간에 항상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의 중요성.
- □ CDPH 지침에 포함된 정보를 포함하여 천으로 된 얼굴 가리개의 올바른 사용.
- □ <u>가족 1차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</u> 및 주지사의 행정 명령 <u>N-62-20</u>에 따른 해당 명령이 발효되는 기간 동안의 직원의 보상 혜택을 포함한 유급 휴가에 대한 정보.
- □ 이러한 정책에 포함된 모든 독립 계약자, 임시직 또는 계약직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필요한 PPE가 있는지 확인합니다.



개별 통제 조치 및 선별 검사

- □ 증상 선별 검사 및/또는 체온 검사를 실시합니다.
- □ 아프거나 COVID-19의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는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.
- □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눈 보호 장비 및 장갑 등의 모든 필수 PPE를 제공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.
- □ 자주 손을 씻고 손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.



□ 다른 사람들이 증상이 있는지 선별 검사하거나 자주 만지는 물건을 취급하는 직원에게 일회용 장갑을 제공합니다.

청소 및 소독 절차

- □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을 철저히 청소합니다.
- □ 자주 사용하는 표면을 자주 살균합니다.
- □ 공유 장비를 매 사용 전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.
- □ 교대 근무 시 또는 사용자 사이에서 만질 수 있는 표면을 더 자주 청소합니다.
- □ 항상 위생 시설을 운영하고 필요한 물품의 재고를 유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필요한 청소 제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□ 직원이 손 소독제 및 기타 위생 장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.
- □ 재향군인병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 시설 가동 중단 후에는 모든 수도 시스템이 사용하기에 안전한지 확인합니다.
- □ <u>EPA(환경 보호 기관)가 승인한</u> 목록에 COVID-19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고 화학 물질 위험, 제품 지침, 환기 요건 및 Cal/OSHA 요건에 대해 직원을 교육합니다. CDPH 천식에 더 안전한 세정 방법을 따릅니다.
- □ 구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품목을 수정합니다.
- □ 직원들이 근무 시간 동안 위생 절차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합니다.
- □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또는 병원체를 공기로 분산시키지 않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바닥을 청소합니다.
- □ 공기 여과 및 환기를 개선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고려합니다.
- □ 실험실, 연구 또는 임상 환경에서 해당 시설의 경우, 기존 세척 및 소독 프로토콜을 평가하고, COVID-19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조치 또는 필요한 조정을 결정합니다.



물리적 거리두기 지침

- □ 물리적 파티션 또는 시각적 신호(예: 근로자 및/또는 직원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표시하는 바닥 표시, 컬러 테이프 또는 표지판 등)와 같은 조치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을 물리적으로 최소 6피트의 거리두기를 하게 하는 조치를 실시합니다.
- □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플렉시글라스 장벽 등을 사용하여 노출을 최소화합니다.
- □ 근로자 간 최소 6피트의 공간을 확보합니다.
- □ 업무 관행을 활용하여 한 번에 사무실에 있는 직원 수를 제한합니다. 물품 보관함을 재배정하거나 교차로 배치합니다.
- □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면 회의를 조정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전화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합니다.
- □ 최소 6피트 이상의 거리두기를 보장하기 위해 밀폐된 구역에 있는 직원 수에 추가 제한을 둡니다.
- □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체온, 육안 점검 및 구두 점검을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증상 검사를 늘립니다.

- □ 시간차 교대 근무 직원은 임금 및 시간 규정을 준수하여 물리적 거리두기 절차를 유지합니다.
- □ 직원 휴게실과 같은 공통 영역을 재구성, 제한 또는 폐쇄하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시할 수 있는 그늘막이 있는 야외 휴게 공간을 제공합니다.
- □ 연구, 생산 및 업무 구역에서 COVID-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, 특히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힘든 곳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십시오: 엔지니어링 통제, 관리 통제, PPE.
 - o 엔지니어링 통제에는 플렉시글라스 또는 기타 견고한 불투과성 파티션과 같은 직원 간의 물리적 또는 공간적 장벽을 생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.
 - o 관리 통제에는 한 번에 같은 곳에 체류하는 인원 수를 줄이고 적절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장하기 위해 교대 근무 횟수를 늘리는 것이 포함됩니다.
 - o PPE는 병원체가 있을 수 있는 물질과 접촉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안면 보호구, 일부 마스크 및 불투과성 장갑을 포함합니다. 일부 안면 보호구 및 호흡용보호구와 같은 일부 일회용 장비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의료종사자와 직원에게 우선 순위가 지정되며 달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


